

#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기덕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왕정순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도, 이상욱, 이숙자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임만균, 최기찬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한 신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 
의원(57명)

## 1. 제안이유

-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또한 모범 교직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6조)

나. 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영유아보육법 ,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보육주간)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7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6조(보육주간)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7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